

4.5.6 학생상별규정

제정 2000. 04. 21.
전부개정 2021. 09.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13장 제67조(포상), 제68조(징계)에 따라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에 적용하며, 대학원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생상별위원회) 학생의 상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포 상

제4조(포상의 대상)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재학 또는 휴학 중 만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자, 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선행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교발전과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크게 기여한 학생
4. 학교 및 사회의 귀감이 되어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5. 그 밖에 해당 소속 부서장(학과장)의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외부기관에서 포상 대상자의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우리 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공적을 남긴 재학생 또는 졸업자에게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성적우수상, 공로상, 모범상, 특별포상, 선행상으로 구분한다.

제6조(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1. 정기포상은 개교기념일, 졸업식일, 입학식일에 수여한다.
2. 수시포상은 공적 발생 시에 수여한다.

제7조(포상의 발의) 관련 부서장(학과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 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한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서류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 관련 부서장(학과장) 또는 학생복지처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포상절차) ① 관련 부서장(학과장)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을 추천·포상하고자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포상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포상기록) ① 학생복지처장은 수상자 명부에 포상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포상학생의 포상내역을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3장 징 계

제10조(징계의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의 기준)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7일 이하
2. 유기정학 : 1개월 이하
3. 무기정학 : 1개월 이상
4. 제적

② 징계양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징계발의) 소속 학과장, 관련 부서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징계 요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사건 경위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서 1부(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4. 지도교수(학과장), 관련 부서장 또는 학생복지처장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징계 심의절차) 제11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장(학과장)은 총장 및 학생복지처장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복지처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제12조(징계의 발의)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이나 기타 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정된 사항의 경우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관계인, 전문가, 지도교수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선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결기간)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징계요구가 있는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정지) ①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 ② 학생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 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③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적변동(휴학 및 자퇴)을 하더라도 복학 및 재입학 시 징계처분 사실은 연속적으로 유효하며, 휴학 및 자퇴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징계처분의 효력은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6조(특별지도) 학생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소속 학과장(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특별감면 및 징계 해제)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다. 다만, 총장은 징계기간 중 품행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무기정학중인 자가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별 감면 또는 징계 해제를 할 수 있다.
 1. 지도교수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반성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 감면 또는 징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특별감면 또는 징계해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전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특별감면 또는 징계해제를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장에게 품의한다. 다만, 무기정학의 해제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18조(가중처벌)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에게 재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9조(통 보) 학생상벌위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징계대상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수(학과장),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대상학생은 징계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8호 서식].

-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심사유를 검토하여 재심 부의권을 가지며,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각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경우 당초의 징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징계 결정을 반복할 만한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당초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및 재의결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말소)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울 경우,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기록말소를 품의할 수 있다.

제22조(부 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1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의 기준(제11조 관련)

1. 징계의 종류 및 양정 기준

가. 근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일 이상, 7일 이하의 근신에 처한다.

- 1) 수업 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 2) 교내 환경을 더럽힌 자
- 3) 과실로 교구 또는 시설을 손상시킨 자
- 4) 교직원에게 불손한 자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인정된 자
- 5) 허가없이 게시물을 첨부하여 선동적 행위를 한 자
- 6) 학교 게시물을 무단 제거하거나 또는 오손한 자
-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자(1과목 부정)
- 8) 학생신분을 이탈한 자로서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근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자

나. 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수업을 방해한 자
-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그 정도가 심한 자(2과목 부정)
- 4)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 5)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자로서 그 정도가 심한 자
- 6)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또는 음주하고 등교한 자
- 7) 학교의 행정을 고의로 방해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8) 기타 학생신분을 이탈한 자로서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유기정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자

다. 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무기정학의 최소기간은 1개월 이상로 하며, 이의 처분을 받은 자는 수업을 정지하고 특별지도를 받는다.

- 1)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교직원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 3)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자
- 4) 교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및 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 5)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외부에 반출한 자
- 6) 도박행위를 한 자
-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자(3과목 이상 부정)
- 8)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 9) 기타 학생신분을 이탈한 자로서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무기정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자

라.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한다.

- 1)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집단적 행위로 전체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운영 및 행정업무를 마비케한 자
- 3) 폭행으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
- 4) 허가없는 집회, 불온공고나 인쇄물로 타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한 자
- 5)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결성 또는 선동행위 등을 한 자
- 6) 교직원을 폭행한 자
- 7)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 8)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
- 9) 학력이 부진하여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10) 기타 교내외에서 학생신분을 이탈하여 학생상별위원회 또는 교수회의에서 제적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자
- 11) 양정기준 표

징계 양정 징계사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인 경우 정도가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인 경우 정도가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인 경우 정도가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성행 불량 가. 폭행상해 및 협박 나. 절도, 횡령 및 무단사용 다. 문서 위/변조 라. 교원의 명예 훼손 마. 기타 형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 바. 각종 법·질서를 위반		○	○	○
2. 성행 불량 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나. 기타 성관련 불량 행위	○	○	○	○
3. 학업 관련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유출 나. 시험 중 부정행위 다. 대리시험 라. 제출물 표절 마. 허위 연구 가담		○	○	○
4. 기타 사항 가.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정보시스템 해킹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 라. 시설물 무단 사용 및 공공시설 사적 점거, 파손 마. 학교 자산 임의 유출 바. 불법영리행위 금지 위반 사. 그 밖의 학칙 및 규정 준수 위반	○	○	○	○

2. 기타사항

- 가. 폭행 및 성추행, 협박, 상습절도 등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상담센터에서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나. 학업 관련 윤리를 위반한 경우 학업 및 연구윤리에 관한 상담을 학교에서 지정하는 상담소에서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다. 학생 윤리 및 연구 윤리 위반의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 단 이때는 미수를 감경사유로 본

다.

라. 형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의 판별은 형법의 기준에 따른다. 단, 법률적으로 기소유예 및 훈방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학생징계를 할 수 있다. 이 때 경찰 및 검찰의 사건보고서를 참고한다.

마. 시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한 경우

- 시험 중 감독 조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대화를 하는 경우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물건이 발견된 경우

2) 중한 경우

-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거나 이를 받아 적은 경우
- 허가되지 않은 컨닝페이퍼 및 서적, 노트 등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소음을 내거나,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시험 부정 및 제출물 표절에 대한 부가 처분

1) 시험 부정 및 제출물 표절의 경우, 해당 과목은 F처분한다.

2) 한 학기 내 두 과목 이상에서 시험 부정행위 및 제출물 표절이 발생하면 그 학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을 F처분한다.

사. 기숙사 내에서 일어난 일은 별도의 생활관운영수칙을 따른다.

아. 학교 시설물 무단 사용 및 학교 재산 무단 방출, 실화 및 방화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그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변상한다. 재산상 피해액이 변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적조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적기간			
공적 내용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포상추천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추천요지		
위와 같이 학생 포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요구서

1. 관련근거

- 가. 「학칙」 제58조 포상 및 징계 (상벌위원회)
- 나.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00조 (징계 발의)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학교상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에 관한 심의를 발의합니다.

3. 징계대상자

4. 징계사유

5. 발의 주요내용

- 20년 월 일 (시간) (장소)에서 신고인(피해자) 학생에 대해 000을 한 행위에 대한사실 여부 확인, 이에 대한 징계 요청

6. ○○대학 상벌위원회 의견서

- 본 사건은 000에 해당되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처리의 전례에 비추어 피신고인(가해자)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청됨.

소속: 직책: 성명 (인)

학생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

사건경위서

구분	신고인	피신고인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위		
신고인요청내용		
신고일		
<p>1. 신고인 상담 및 소견 가. 상담 내용 나. 소견</p> <p>2. 피신고인 상담 및 소견 가. 상담 내용 나. 소견</p> <p>3. 신고인 및 피신고인 진술서 요약 가. 신고인 진술 요약 나. 피신고인 진술 요약</p>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20..., 0000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조치사항			
조사자 의견			
조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의견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의견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처분통지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건명			
징계처분 일자			
징계 사유 (조치 사항 의결 사유)			
징계처분 내용 (조치 사항)			
<p>초당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초 당 대 학 교 총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징계 학생(학부모) 귀하</p>			

징계 재심의 요청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건명			
징계처분 일자			
징계처분 내용 (조치 사항)			
징계 재심의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징계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 (인)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